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

개정\_ 2014년 3월 19일 시행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 Contents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변경·시행 ..... 1
- ※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관련 주요 변경사항 ..... 2
- ※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를 위한 발급서류 ..... 3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 4
- ※ 진단서 작성요령 ..... 5
- ※ 의학적 평가기준 ..... 6
  
- 제1장 총론** ..... 7
  - 1. 목적 ..... 8
  - 2. 적용범위 ..... 8
  -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 8
  - 4. 평가방법 ..... 10
  - 5. 평가결과 합산 ..... 11
  
- 제2장 질병유형별 평가기준** ..... 13
  - 1. 근골격계 질환 ..... 14
  - 2. 신경기능계 질환 ..... 27
  - 3. 정신신경계 질환 ..... 31
  - 4. 감각기능계 질환 ..... 33
  - 5. 심혈관계 질환 ..... 39
  - 6. 호흡기계 질환 ..... 41
  - 7. 소화기계 질환 ..... 43
  - 8. 비뇨생식계 질환 ..... 46
  - 9. 내분비계 질환 ..... 48
  - 10. 혈액 및 증양질환계 질환 ..... 50
  - 11. 피부질환계 질환 ..... 52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변경·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는 2010년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근로능력 판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2년 12월부터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도시행 초기에 문제시되었던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판정편차로 인한 수급권 차등 문제가 해소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전문기관 업무수행 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가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판정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신뢰도가 보다 보장되고 균형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의학적 평가기준의 경우 외과질환(근골격계 등)과 내과질환(호흡기계 등) 기준 간 차이를 완화하고, 장애판정기준과의 평가기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등 평가기준의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경기능계 기준을 포함한 일부질환의 평가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대상자의 실질적인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가 평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학적 평가기준을 개선·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의사 및 한의사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4. 3. 19

보건복지부

#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를 위한 발급서류

## 발급서류

구분	서류	비고
필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li> <li>○ 진료기록부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개월 이내 발급</li> <li>최근 2개월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견서(아래 해당되는 경우)</li> <li>-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li> <li>-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li> </ul>	
필요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결과지</li> <li>○ 투약기록지</li> <li>○ 소견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시</li> <li>요구시</li> </ul>

## 의학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추가자료

질환유형	구분	해당자료
(공 통)	진료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약기록지</li> <li>- 평가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li> </ul>
근골격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부위 영상자료(X-ray 등) 또는 판독지</li> <li>- 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결과</li> <li>- 도수근력검사 결과</li> </ul>
신경기능계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진중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경과기록</li> <li>- 뇌·척수 영상자료(MRI 또는 CT) 또는 판독지</li> <li>- 신경손상(마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근전도 등)</li> </ul>
정신신경계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진기록지</li> <li>-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MMSE, GDS, CDR 등)</li> </ul>
감각기능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li> <li>- 평형검사(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 등)</li> <li>- 안과검사(안저사진, 전안부 사진, 시야검사결과지)</li> </ul>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전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li> </ul>
호흡기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능검사, 흉부영상(X-ray)판독지</li> </ul>
소화기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액검사(간기능검사 포함), 복부 초음파 및 CT판독지</li> </ul>
비뇨생식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여과율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li> </ul>
내분비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액검사결과</li> </ul>
혈액 및 중앙질환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액검사결과, 영상자료(CT 또는 MRI)판독지</li> </ul>
피부질환계	검사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칼라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li> </ul>

※ 각 질환별 의학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기록지 등 발급 협조

## 1. 기본사항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의사 및 한의사 발급 가능(한의사는 근골격계, 신경기능계만 발급 가능)
-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 및 한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
- 평가대상 질환유형, 상세질환명, KCD분류번호, 진료기간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등 상세히 기재
- 전문과목 및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기재
- 작성 완료 후 작성 의사가 서명하고, 발급기관의 직인을 우측 하단에 반드시 날인

## 2. 세부 작성요령

### 2-1. 진단 질환명

- 평가대상 질환명 : ①~⑪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기재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가 가능

질환유형	근골격계	감각기능계	소화기계	피부질환계
질병명	상·하지, 척추	청각, 평형, 시각	간(담,췌장), 위장	피부질환, 외모·결손

- 여러가지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한 질병 2개만 기재
-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않는 질병이지만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재
- 진료기간은 당해기관에서 해당질병으로 진료를 처음 시작한 날과 최종 진료한 날을 기재하되, 다른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은 필요하지 않음

### 2-2. 근로능력 평가내용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하여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평가대상 질환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2-3. 치료 경과내용

- 주요증상 및 발현횟수는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증상 및 진찰소견, 검사소견(검사명), 최근 1년 내 발현 횟수 등 작성
- 주요 치료내용은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 첨부 가능),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수술명(수술일자), 입퇴원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기타 특이사항란에는 신청자가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장애유형과 그 등급을 표시  
※ 1~4급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 없음



# 제1장 총론

1. 목적
2. 적용범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주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기준
  - 진단서 유효기간
  -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4. 평가방법
5. 평가 결과 합산

##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 1)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작성이 가능하다.
- 2)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대상 질환 내의 질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가) 근골격계 질환 <상·하지> 및 <척추>
  - 나) 감각기능계 질환 <청각>, <평형> 및 <시각>
  - 다)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및 <위장질환>
  - 라) 피부질환계 질환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혼질환>
- 3)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일반질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 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 가)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 4) 진단서 작성 내용
    -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다.

## 다.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 라.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평가표에 따른 단계평가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의 고착 여부를 평가한다.

- 1)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2) 의학적 상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각 질환유형별 평가방법 및 검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평가 결과 합산

가. 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라도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위로 평가할 수 있다.

- 1) 신경기능계: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 2) 감각기능계(청각):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
- 3) 내분비계: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7. 소화기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제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있다.
- 질병의 발생일, 치료내용, 치료기간,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을 기재하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간질환으로 인한 간성뇌증,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복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한다.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다. 유의사항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나, 소화기계 질환유형의 <간질환>, <위장질환>은 별도의 평가대상 질환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 ※ <간질환>과 <위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간질환(또는 위장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 평가 가능

## 위장질환

### ■ 해당 질병

- 상부, 하부 만성위장관 질환

### ■ 평가방법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의 악화 여부, 합병증 발생 정도, 수술 및 입원치료경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진단받고,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만성위장관 질환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제한이 있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4단계	-만성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약물복용이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루가 있는 경우 -장루가 있는 경우